

조례안 검토보고서

- ①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 ②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 목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4월 12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II.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현행 방재제도로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안 제5조).
- 다.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안 제7조).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항목 검토

라.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 시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및 해촉 조치를 취함(안 제11조).

IV.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제시를 통해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으며
- 안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은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위험요인,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 현지조사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용역 등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1) 검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위원장), 안 제13조(간사)를 종합하면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위원, 복구지원담당이 간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방방재청의 조례 표준안에서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간사는 자연재해 담당과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이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실·국이 있는 자치단체를 표준으로 하여 표준안을 만든 것으로 보이며, 검토위원회의 기능이 서면검토가 원칙이고 방재에 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만큼

군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군수보다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해업무 담당주사는 간사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됨.

안 제2조, 안 제4조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의 견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u>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u> 및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p>
<p>제4조(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u>위원장은 부군수가</u> 된다. 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u>사무를</u>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u>위원회의</u>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조(위원장) ①.....<u>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u>은 <u>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이</u>..... ②..... <u>그 사무를</u> 총괄한다. ③.....<u>검토위원회</u>..... </p>

2) 안 제3조(위촉장의 교부) 삭제

-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 한편, 제2조에서는 위원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부장과 위원장이 서로 상충되며, 단순히 위촉장 교부만을 하기 위해서라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제3조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3조 관련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의 견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삭 제>
제4조 ~ 제14조 (생 략)	제3조 ~ 제13조 (현행 제4조 내지 제14조와 같음)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제6조.....
제12조(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생 략)	제11조(회의록) ①제4조.....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기타 불명확한 표현의 정리

- 안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에서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로 되어 있으나 운영주체인 위원장은 회의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며
- 안 제14조 수당과 여비에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수당·여비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5조, 안 제14조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의 견
<p>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 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u>위원장이</u>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p> <p>② (생략) ③ (생략)</p>	<p>제4조(검토위원회 운영) ①.....<u>위원장과 위원장이</u>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당과 여비) <u>위원회의</u>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과 여비) <u>위원회에 참석한</u></p>

라. 종합적인 의견은

-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전 심의기능의 강화로 무분별한 개발억제와 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임.
- 본 조례에 의한 검토위원회 위원의 검토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각종 사업허가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점이 있고, 집행부의 추정에 의하면 향후 위원회의 연간 처리건수가 50건 정도로 예상되고 또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후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새로운 규제의 신설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는 등 규제신설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임
-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6일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늦어도 지난해 연말까지는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대상사업 중 8건이나 검토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검토위원회 구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내용 중 일부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06. 2. 24 ~ 3. 16(의견 없음)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위원회의 구성)①(생 략)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u>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u>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 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2조(위원회의 구성)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p>
<p>제3조(위촉장의 교부)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p>	<p>제3조 <삭 제></p>
<p>제4조 ~ 제14조 (생 략)</p>	<p>제3조 ~ 제13조 (현행 제4조 내지 제14조와 같음)</p>
<p>제4조(위원장)①검토위원회의 <u>위원장은 부군수가</u> 된다. 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u>사무를</u>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u>위원회의</u>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조(위원장)①.....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u>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이</u>..... ②.....그 <u>사무를</u> 총괄한다. ③.....<u>검토위원회</u>..... </p>
<p>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u>위원장이</u>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p>	<p>제4조(검토위원회 운영)①..... <u>위원장과 위원장이</u>.....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p>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검토의견 제출)..... 제6조..... </p>
<p>제12조(회의록)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회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생 략)</p>	<p>제11조(회의록)①제4조..... 1. ~ 7.(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당과 여비) <u>위원회의</u>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과 여비) <u>위원회에 참석한</u>..... </p>

관련 법령 발취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⑥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장,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아 당해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2006-24호>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4월 12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II. 제안이유

-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거주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

III. 주요내용

-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필요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원기준 및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지원금 지급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이주 외국인 여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IV.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거주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으로
-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의 목적,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정의, 지원기준 및 시기, 지급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 정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경상남도의 신규 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 금년에는 2억 4,000만 원(도비30%, 시군비70%)의 사업비로 시·군별로 2명씩 40명을 계획인원으로 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계획인원 2명으로 도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 합계 1,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 이 시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정상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해야 하므로 이번에 우리 군의 조례는 물론 경상남도과 전시·군에서 일제히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목적에서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만을 주선하고 있어 내국인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은 지원이 배제되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 연령별, 또는 빈부의 격차를 감안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안 제6조 지원금 지원절차에서 자체심사 기준, 안 제8조의 사후관리 대책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세부 추진방향을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제9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안 제8조의 사후관리는 농촌총각이 국제결혼한 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곧바로 이혼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면밀한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며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큼, 대책수립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재량이 없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용어의 수정이 필요함.

안 제8조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의 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u>강구할 수 있다.</u>	제8조(사후관리) <u>강구하여야 한다.</u>

라.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속 감소하는 농촌인구의 증대효과가 다소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 본 조례에 의한 혼인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동시에 지원되는 시책사업으로 우리 군의 조례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 금후 경상남도의 조례가 늦어지거나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끝으로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음.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12,000천 원(도비 3,600, 군비 8,400) 확보

다. 입법예고 : 2006. 3. 21 ~ 4. 10(의견없음)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 관리 대책을 <u>강구할 수 있다.</u>	제8조(사후관리)..... <u>강구하여야 한다.</u>

관련법령 발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8조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2안)

원 안	수 정 안
제3조(위촉장의 교부)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삭 제>
제4조 ~ 제14조 (생략)	제3조 ~ 제13조 (현행 제4조 내지 제14조와 같음)
제4조(위원장)① <u>검토위원회의</u>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u>사무를</u>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u>위원회</u> 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장)① <u>검토위원회의</u>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②..... <u>그 사무를</u> 총괄한다. ③..... <u>검토위원회</u>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u>위원장이</u>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4조(검토위원회 운영)①..... <u>위원장과 위원장이</u>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u>제7조의</u>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 <u>제6조</u>
제12조(회의록)① <u>제5조</u> 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회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11조(회의록)① <u>제4조</u> 1. ~ 7.(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과 여비) <u>위원회의</u>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u>위원회에</u> 참석한.....

*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의 “간사”를 “총무”로

수 정 안 대 비 표(1안)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위원회의 구성)①(생 략)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u>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u>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 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2조(위원회의 구성)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p>
<p>제3조(위촉장의 교부)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p>	<p>제3조 <삭 제></p>
<p>제4조 ~ 제14조 (생 략)</p>	<p>제3조 ~ 제13조 (현행 제4조 내지 제14조와 같음)</p>
<p>제4조(위원장)①검토위원회의 <u>위원장은 부군수가</u> 된다. 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u>사무를</u>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u>위원회의</u>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조(위원장)①.....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이..... ②.....그 <u>사무를</u> 총괄한다. ③.....<u>검토위원회</u>..... </p>
<p>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u>위원장이</u>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p>	<p>제4조(검토위원회 운영)①..... <u>위원장과 위원장이</u>.....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p>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검토의견 제출)..... 제6조..... </p>
<p>제12조(회의록)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회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생 략)</p>	<p>제11조(회의록)①제4조..... 1. ~ 7.(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당과 여비) <u>위원회의</u>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과 여비) <u>위원회에 참석한</u>..... </p>